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684

2026. 2. 23.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6. 2. 23. 운영위원장

나. 상정의결

- 제3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6. 2. 23.)
  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: 운영위원장 이동호 의원)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[별표4]의 경조사 휴가일수표의 출산(배우자) 중 “10일”을 “20일”로,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“15일”을 “25일”로 개정

나. [별표4]의 경조사 휴가일수표의 사망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

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“1일”을 “3일”로 개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기　　타: 없음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6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7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: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　끝.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위원회안)

의 안 번 호	684

제안연월일: 2026. 2. 23.
제 안 자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[별표4]의 경조사 휴가일수표의 출산(배우자) 중 “10일”을 “20일”로,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“15일”을 “25일”로 개정

나. [별표4]의 경조사 휴가일수표의 사망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“1일”을 “3일”로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기 타: 없음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]

경조사 휴가일수표(제15조 관련)

구분	대상	일수
결혼	본인	5일
	자녀	1일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일
출산	배우자	2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)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1일
입양	본인	20일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일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일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5일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일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일

신·구 별표대비표

현 행

[별표 4]

경조사 휴가일수표(제15조 관련)

구분	대상	일수
결혼	본인	5일
	자녀	1일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일
출산	배우자	1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)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1일
입양	본인	20일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일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일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5일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일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일

개 정 안

[별표 4]

경조사 휴가일수표(제15조 관련)

구분	대상	일수
결혼	본인	5일
	자녀	1일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일
출산	배우자	2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)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1일
입양	본인	20일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일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일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5일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일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일